

### Ⅲ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(부제 2:일본)

#### 1.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배경

개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 · 이용 등으로부터,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생각이, 큰 틀을 이루고 있다.

#### 2. 보호범의

“자신의 정보유출을 통제 할 수 있는 권리”로서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실현함과 동시에, 개인정보를 기술적 · 조직적으로 처리하여 보호하는 일 또한 목표의 일환이다. 즉,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(security)확보가 보호 되어야 하는 범의이다.

#### 3. 대상사업자

“개인정보취급사업자”라고 하여,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다.(법 2③, 령 2) 과거 6 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, 5000 명 이상의 개인데이터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.

#### 4. 개인정보

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는,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“개인정보” “개인 데이터” “보유개인데이터” 와 같이 3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.

##### (1) 개인정보

- ① 개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. 법인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.
- ② 생존하는 사람의 정보로 한정한다.
- ③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(개인식별성)이 필요하다.
- ④ 다른 정보와 대조하여 쉽게 식별할수 있는 경우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.

##### (2) 개인데이터

특정한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“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” 등으로 정의한다.(법 2②) 그리고, “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”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를 “개인데이터”라고 한다.(법 2④) “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”에는, 주소관리소프트와 같은 전자 데이터베이스(컴퓨터처리정보) 뿐만 아니라, 종이 명부(名簿)와 같은 것 (매뉴얼처리정보)도 포함된다.

### (3) 보유개인데이터

6 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개인데이터를 “보유개인데이터”라고 한다.(법 2⑤, 령 4) 보유개인데이터는,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, 개시, 내용의 정정, 추가 또는 삭제, 이용정지, 소거 및 제 3 자에 대한 제공정지를 할 수 있다. 따라서, 개인데이터 중에서도 개시의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, 6 개월 이상 계속이용중인 데이터라 하여도 “보유개인데이터”로부터 제외된다. 그 외에, “보유개인데이터”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항들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. (령 3)

- ①개인데이터의 존재가 알려지면, 본인 및 타인의 생명·신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이거나, 재산에 위해(危害)가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(아동학대 및 DV[Domestic Violence:가정폭력]에 관한 정보)
- ②개인데이터의 존재가 알려지면,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조장·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(수상한사람 및 클레이머(claimer)정보, 폭력단 등의 반사회적세력에 관한 정보)
- ③개인데이터의 존재가 알려지면, 국가의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, 국제기관과의 신뢰관계를 흐트러치는 등 국제기관과의 교섭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(요인[要人]의 행동예정에 관한 정보 등)
- ④개인데이터의 존재가 알려지면, 범죄의 예방, 진압, 수사,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(범죄수익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신고대상정보)

### 5. 처벌

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, 주무(主務)장관의 감독대상이 된다. 구체적으로는, 주무장관은 보고징수(법 32), 조연(법 33), 권고 및 명령(법 34)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 사업자가 보고를 소홀히 하거나, 허위보고를 한 경우 30 만엔(약 430 만원)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(법 57),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(법 56).

### 6. 세무사업무와 개인정보보호

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부터, 세무사는 세무사법 상에 수비의무 [守秘義務: 일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, 법률의 규정에 따라 “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”해야 하는 법률 상의 의무]가 있다(세무사법 38). 수비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에는, 주무장관의 권고, 명령 등이 필요치 않으며, 그 내용 또한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 만엔(약 1400 만원) 이하의 벌금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처벌보다 훨씬 그 강도가 세다.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이라면, 세무사법은 특별법에 해당한다.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시하므로, 세무사는 일반사업자보다 더욱 엄격한 정보관리가 촉구된다. 정보관리의 실제업무에 있어서, 세무사법상의 수비의무위반이 아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.